

제287회 거창군의회의 정례회

조례안

(16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5-80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5-81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략담당관)	5
2025-82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략담당관)	9
2025-83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과)	17
2025-84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과)	19
2025-85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소통과)	21
2025-86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1
2025-87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예술과)	35
2025-88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43
2025-89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47
2025-90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55
2025-91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안전총괄과)	65
2025-92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69
2025-9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77
2025-94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83
2025-95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농업과)	8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8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법령위임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
- 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48조·제60조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68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1,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5.~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
4. 영 제54조제1항의 사항

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제5항 중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u>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u>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u>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 4. 영 제54조제1항의 사항 <u>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u>
<u>제3조(구성) ①~④ (생략)</u>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u>	<u>제3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u>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
- 나. 관련조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안 제2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나. 2025년 예산 1,000천원
 - 1)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2) 10명*1회*100천원 = 1,000천원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8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고향사랑 기부로 이어진 관계를 생활인구 확대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자 예우 사항 확대 등을 정함(안 제17조)

- 1)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 2)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나. 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제12조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7.~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제7조제3호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을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예우를 할 수 있다.”를 “예우(이하 “기부자예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자 예우”를 “기부자예우”로 한다.

3.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u>답례품의 품목</u>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u>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u>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u>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u>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u>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삭 제>

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
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
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고향사
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
자”라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
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

<신 설>

3.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
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고향사
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
자”라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
우(이하 “기부자예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
사랑 기부금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

3.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
일한 감면 혜택

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
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25-8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화장시설 설치·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정함(안 제3조~제8조)

1) 존속기한, 조성, 용도, 관리·운용, 회계관계 공무원

나.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지원계획, 주민지원사업 신청, 주민지원 협의체를 정함(안 제9조~제12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본예산 확보예정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불임)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유치마을: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유치한 남하면 대야마을
2. 인접마을: 화장시설에 인접한 산포·오가·용동·월포·남불·전척의 6개 행정마을
3. 유치면지역: 화장시설이 위치한 남하면

제3조(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 금액(화장시설 운영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 지원 사업
가.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
나. 주민공동사업
다. 주민복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60억원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 다만, 유치마을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
2. 화장시설 관련 일자리 우선 제공
3. 유치면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제10조(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등) ① 주변지역 주민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①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

1. 지원계획
2.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변경계획도 포함한다)
4.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주변지역 면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금의 용도

나. 관련조문: 안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계
세입						
군비(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징수액의 20 퍼센트 등)	4,030,000	2,000,000	206,600	206,600	206,600	6,649,820
세출						
기금의 용도(주민생활 지원금 및 주민공동 사업 등)	4,030,000	2,000,000	206,600	206,600	206,600	6,649,800

가. 화장시설 사용료 등 징수액에 따라 비용추계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보고 참고
(2024. 8. 27.)

3. 기금 조성 및 지출 계획

가. 2026년~2027년

1)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6,030,000천원

2) 지출: 6,030,000천원 지원

나. 2028년~2030년

1) 조성: 사용료 징수액 20퍼센트 619,800천원

2) 지출: 619,800천원 지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남하면 월곡 마을이장 김위선	- 주변지역 중 인접지역 마을에 '월곡마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포함하여 주기를 건의함 ※ 주변지역 중 인접지역 마을에 산포, 오가, 용동, 월포, 남불, 전척 6개 마을을 정함	- 주변지역 중 인접 6개 마을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2km 이내에 있는 마을이며 - 이를 정한 이유는 타 지자체 사례, 피해지역 범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였음 - 개인차가 심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	- 월곡마을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2km 초과하여 있으므로 - 월곡마을을 주변지역 인접마을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 - 대야마을과 6개 인접마을 외에도 인센티브 지원이 되도록 월곡마을이 포함되는 남하면(유치면)지역을 별도로 조례(안)에 정하였음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5-8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는 호응 부족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업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정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7.~3.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5-8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조례에 정함이 없어도 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권고 대상 정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7.~3.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8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4. 12. 3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

나. 선정대리인 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19조)

- 1)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 2)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
- 3)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다.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를 이관함(안 부칙 제2조)

- 1) 현행: 재무과 소관,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근거
- 2) 변경: 민원소통과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93조의2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8.~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1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 중 “공휴일·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18조(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③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實費) 보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신 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

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1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18조(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1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實費) 보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8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신설함(안 제3조)

- 1) 현행: 연임제한 없음
- 2) 변경: 세 차례만 연임 가능

나.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21조)

- 1)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3,10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7.~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유형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기업유치 특별지원 범위 확대

나. 관련조문: 입지보조금(제4조), 고용보조금(제5조), 교육훈련보조금(제6조), 설비보조금(제7조), 이전보조금(제8조), 기업유치 특별지원(안 제21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계	-	3,100	4,200	4,200	4,200	15,700
도비	-	-	3,360	3,360	3,360	10,080
군비	-	3,100	840	840	840	5,620

3. 관련 의견

2027년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유치 특별지원 대상에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포함하는 등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6년 투자완료예정기업 보조금 지원

: 3,100백만원(군 3,100)

2. 2027년~2029년 입주예정기업 보조금 지원

: 4,200백만원(도 3,360, 군 840)

* 연평균 3개 기업(40억 투자 중 부지매입비 20억 가정 시)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 미 정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5-87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신달자문학관 완공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거창군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육성하여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달자문학관의 설치근거, 명칭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문학관의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제한 등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라. 소장품의 구입 및 기증을 정함(안 제8조)
- 마. 이용 신청, 이용의 제한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바.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별표 1·2)
- 사. 이용자의 설비,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0,550천원 추경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4. 29.~5.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신달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전시실
2. 강의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

② 문학관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둔다.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관·관리·전시 및 활용
2. 군 문학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출판 등
3.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문학관 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문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3. 문학관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관람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이용 신청 등) ① 전시·공연·교육 또는 문학진흥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문학관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문학관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

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문학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이용 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학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시설	기준	이용료	비고
강의실	1일	10,000원	- 냉난방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5,000원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기준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4일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가. 이용료 전액 나.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4일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가. 이용료 전액 나.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거창군 신달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신달자박물관 운영·관리 비용

나. 관련 조문: 설치 등(안 제2조), 사업(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총 비용(a - b)		30.5	97	98	98	99	422.5
세출(a)	군비	30.5	98	99	99	100	426.5
세입(b)	이용료		1	1	1	1	4

나. 박물관 리모델링 비용: 500백만원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6년 예산 98백만원

1. 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1명 27백만원
2. 박물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1명 13백만원
3. 프로그램 운영: 40백만원
4. 사무기기 임차 등 공공운영비: 18백만원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88	제출일자	2025. 5. 28.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예술인이 지역에서 체류·활동하게 함으로써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창군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입주 예술인 지원을 신설함(안 별표)
- 나. 사무의 위탁을 정비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7,36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4.~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법인·단체”로 한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의 세부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u>○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신 설></u> ○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의 제작 ○ 향토사를 기반으로 하는 책자 발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문화예술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문화예술 법인·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예술인 거주·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활동 등 지원
- 나. 관련 조문: 지역문화 지원사업(안 별표)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나. 2025년 지원내용 추계: 47,360천원(2025년 본예산 편성)
 - 1) 임대료: 레지던시 입주 예술인 거주공간 무료 제공
 - 2) 창작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7,360천원
 - 가) 창작활동비 지원: 12,000천원(500,000원×4명×6월)
 - 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당: 15,360천원
 - (1) 80,000원×4명×8회×6개월
 - 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20,000천원(물품 등)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8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1)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센터, 복지센터

나.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별표 2·3, 삭제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3조 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은”을 “복지센터는”으로 각각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신청 등)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을 “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30분 이내
 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
 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 제8조)제4항 중 “복지관”을 “복지센터”로 “일부 및”을 “일부나”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로 하고 시설구분란 제2호 중 “소강당”을 “프로그램실, 소회의실”로 하며 비고란 중 “토·일요일,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등의 반환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 이용이나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명칭 및 위치)</u>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u>제3조(복지관의 사업)</u> 복지관은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u>제4조(사용허가)</u>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u>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u>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u>제3조(복지센터의 사업)</u> 복지센터는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u>제4조(이용신청 등)</u>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 <u>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30분 이내

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

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제6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수강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복지향상 및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1명/1과목)	
6.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세 이하인 가구(1명/1과목)	
1. <u>국가보훈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u>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u>그 밖에 복지센터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100분의 50

- 비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별표 3]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이용료	1. 천재지변, <u>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u> 로 <u>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u>	<u>이용료 전액 반환</u>
	2. <u>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u> 가. <u>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u> 나. <u>이용 예정일 그날 이용 전까지 취소</u>	가. <u>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u> 나. <u>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u>
	3. <u>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u> 가. <u>이용 예정일 그날 이용 전까지 취소</u> 나. <u>이용 중에 이용을 취소</u>	가. <u>이용료 전액 반환</u> 나. <u>이용료를 일할 계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전액 반환</u>
수강료	강좌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수강료 전액 반환
	강좌 수강 중 취소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u>수강료 전액 반환</u>

-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9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 이후 유골 처리방식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로 용어 등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별표 1~3)
(현행) 공설공원묘지
(변경) 공설장사시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포괄하는
법적 용어
-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 후 처리방법을 구체화함(안 제6조)
- 다.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에 대한 유골 및 사용료등의 반환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9조·제20조·제23조·
제28조,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 권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4.~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 제목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설공원묘지는”을 “공설장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호·제11호를 제3호·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공설공원묘지와”를 “공설장사시설과”로 한다.

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고자가 신청하는 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 제목 “(분묘의 형태 등)”을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분묘”를 “분묘 및 자연장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제목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공원묘지의 설치·명칭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이하 “공설공원묘지”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① 공설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	<u>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

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삭 제>

<삭 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②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와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15년, 20년, 25년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4.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장사시설과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고자가 신청하는 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분묘의 형태 등)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면적 (제곱미터)	장사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u>매장</u>	<u>봉안</u>	<u>자연장</u>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분묘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분묘	봉안당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분묘	봉안당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분묘	봉안당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분묘	봉안당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분묘	봉안당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분묘		자연장지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분묘	봉안당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제4조제1항 관련)

<u>장사시설</u>		<u>사용료(30년)</u>		<u>관리비(30년)</u>	
<u>구분</u>	<u>유형</u>	<u>기준</u>	<u>금액(원)</u>	<u>기준</u>	<u>금액(원)</u>
<u>분묘</u>	<u>봉분</u>	1기당	600,000	1기당	400,000
	<u>평장</u>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u>봉안</u>	<u>봉안묘</u>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u>봉안당</u>	1개안치단당	200,000	1개안치단당	200,000
<u>자연장</u>	<u>자연장지</u>	1기당	200,000	1기당	200,000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5-91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그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화재폐기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 대상·기준·제외·신청을 정함(안 제3조~제7조)

-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2) 소실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3) 빈집, 중복지원 등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9.~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거창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폐기물”이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다만,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 건물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증명원에 소실면적이 화재 피해 대상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화재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나. 관련조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예정

가. 경남도 내 시군 평균 지원 수: 5건

나. 평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4,000천원

다. 5건 * 4,000천원 = 20,000천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9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생활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처리 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내용 신설함(안 제2조·제3조·제7조)

- 1) 정의, 군수의 책무
- 2) 배출 및 처리 방법

나. 용어나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8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5·제15조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6조의3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25,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4. 29.~5.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5호(종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조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조 제목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이나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봉 등을 한 후 배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제8조 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청소 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이나 민원처리 작업
2.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
3. 자동상차장치 부착차, 음식물전용 수거차, 집게차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차
4.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삭 제>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재물 (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따른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신 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⑦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이나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봉 등을 한 후 배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청소 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이나 민원처리 작업
2.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
3. 자동상차장치 부착차, 음식물전용 수거차, 집게차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차
4.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u>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u> <u>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u>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u>5.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u> <u>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및 안내문
제작배포 등

나. 관련 조문: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수거 등 관리체계 마련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비용이 5천만원 미만

1) 수거함 구입 평균 금액: 400천원 × 50개소 정도 = 20,000천원

2)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5,000천원 정도

작성자 환경과장 표정애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9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에 맞게 교육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1) 대상: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 2) 내용: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3)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합동평가대상

나. 예산조치: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의 교육 일괄 시행에 따라 예산 불필요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23.~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필수조례 참고조례안 반영함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6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해야 한다.</u> <u>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u> <u>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u> <u>3. 장애인의 인권</u> <u>4.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u> <u>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u> <u>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군수는 필요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u> <u>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u>제16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 <u>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u> <u>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u> <u>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u> <u>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u> <u>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u> <u>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u> <u>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u> <u>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u> <u>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u> <u>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u> <u>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u> <u>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u> <u>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u> <u>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u> <u>3. 성폭력 예방교육</u> <u>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u>

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
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
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9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차량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명, 별표)
-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비용을 신설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도로교통법」 제2조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5.~5.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u>	<u>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u>

[별표]

견인·보관 비용(제2조 관련)

1. 견인비용

대상 차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10킬로미터 까지)
<신 설>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2.5톤미만	72,200원
2.5톤이상~4톤미만	100,300원
4톤이상~8톤이상	128,000원
8.0톤이상~12톤이상	154,400원
12톤이상	174,500원

2. 보관비용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9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거창군 농업인의 분석실 이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농업인에게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함(안 제9조)

- 1) 현행 무료범위: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 2) 추가: 농산물 잔류농약
- 3) 예외 징수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제154조·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11.~3. 3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군수는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u>	<u>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u>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u>제9조(분석 수수료) ① 군수는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의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u> <u>② 제5조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u> <u>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u>제9조(분석 수수료) ① 군수는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u>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무료

나. 관련 조문: 분석 수수료(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2023. 12. 종합분석실 운영 이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현황

1) 대부분 공공급식: 무료

2) 농가 1건: 230,000원

나. 분석 수수료 무료로 인한 세입감소 거의 없음

작성자 미래농업과장 이 창 진